

춘천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나308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나30895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가단98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윤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고영래

변론 종결2022. 7. 21.

판결 선고2022. 8. 25.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가단98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C, D, E, F, G에게 원주시 H 전 502m²에 관하여 신탁계약해지 또는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H 전 502m²에 관하여 신탁계약해지 또는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항소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장과 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2021. 12. 3. 원고의 대표자인 M의 주소지에 제1심판결문을 발송하였고, M은 2021. 12. 6. 위 판결문을 수령하고 수령인란에 서명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2022. 1. 26.에서야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항소는 제1심판결문 송달일로부터 항소기간인 2주를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설령 원고의 항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두봉

판사신흥호

판사여현주